

## 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<u>중국</u>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시장규제국(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국)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 ], 5.6.2 [ ], 5.7.1 [ ], 3.2 [ ], 7.2 [ 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4.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전기 및 전자제품(HS code(s): 85; 90), (ICS code(s): 13.020)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중국 국가표준, 전기 및 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의 제한적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(15페이지, 중국어)
6. 내용: 본 문서는 전기 및 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의 제한 요구 사항, 라벨 요구 사항 및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을 명시한다. 이 문서는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, 판매, 수입되는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적용된다.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, 환경 보호
8. 관련 문서: -
9.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승인 후 12개월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일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 중국 WTO/TBT 국가 통보 및 질의처 전화 : +86 10 57954633/ 57954627 이메일: <a href="mailto:tbt@customs.gov.cn">tbt@customs.gov.cn</a>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CHN/24_08514_00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CHN/24_08514_00_x.pdf</a>